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별 청렴행동 수칙

2015. 10.

## 인허가 또는 승인 업무관련 청렴행동 수칙

1.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방송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또는 재허가, 승인 또는 재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위원에게 알선, 청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인허가 또는 승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방송통신사업자의 사업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5.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방문을 요청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자료요구나 사업장 방문도 하지 않는다.

## 조사 및 시정조치 업무관련 청렴행동 수칙

1. 조사계획 및 결과 등을 사전에 조사당사자 또는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2.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사업기밀 및 직원의 개인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조사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3. 조사 후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한다.
4. 직무관련자가 혈연, 학연, 지연,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직접적인 연고관계에 있는 경우 미리 신고하고, 해당 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 재정 및 알선 업무 관련 청렴행동 수칙

1.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직무수행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주요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를 최대한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분쟁조정 및 알선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 청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아니한다.
5. 분쟁조정 및 알선을 통해 알게 된 정보는 사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